

#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집자 주]

**정**부의 이번 사면조치는 지난 8월 14일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았던 건설업체, 전기·정보통신공사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기타 건설관련업체의 각종 입찰참가 제한조치 및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다만 2005년 8월 15일 이후 뇌물수수 또는 부실시공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을 예정인 업체 및 기술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민·형사상 책임 및 이미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실·페이퍼 컴퍼니 퇴출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자격기준에 미달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은 그 미달시점과 관계없이 이번 특별사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타 산업과 달리 민·형

사상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 등 영업을 제한받는 건설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가로 촉발된 해외건설수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중대 건설선진화 본부장은 “이번 사면조치가 건설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업계 역시 향후 고용창출 등 기업활동에 진력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건설업체 특별사면 이유

그동안 부실벌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건설산업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방과를 발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될 경우 건산법에 의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나아가 건기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과 함께 전체 발주처로부터 PQ 때 신인도 감점을 받게 됨으로써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치명적인 제재를 받는다.

건교부는 다른 부문에 비해 과다한 건설부문의 중복처벌 조치가 건설시장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해외건설수주가 사상 최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의 경쟁사들이 국내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문제삼는 등 악용함으로써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수주경쟁력 약화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 □ 특별조치 혜택 범위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 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이 이번 사면으로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도 유효하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도 이행해야 하지만 처분으로 인한 감점 등 입찰 때 불이익은 소멸된다.

또 2005년 8월 15일 이후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뇌물수수 및 부실시공 행위에 대한 처분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건산법 개정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과거 관행에 따라 범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구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인식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비리에 연루됐거나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부실시공 혐의 건설업체 등은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교부는 또 부실·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책으로 등록기준, 자격기준에 미달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미달시점에 관계없이 이번 감면대상에서 전면 제외했다.

그러나 이들 범법행위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기타 제재처분은 사면받았다.

아울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지난해 8월 15일 이후 범해진 뇌물수수, 부실시공을 제외한 기타 행위로 8월 14일 이전에 범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자격 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건강  
상식

## 흡연, 두뇌엔 보약?

흡연을 하면 뇌세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은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콘티닌(continine)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 적당한 양을 투여하면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세포가 파괴되어 일어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06년8월11일 발표한「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특별조치의 취지

- 부실벌점, 부정당업자제처분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해외건설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지장을 초래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부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자정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 II. 특별조치의 대상

###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
- 해당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

전기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 건설 · 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구 소방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 2. 건설기술자

□ 개요

- 2006.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

## III. 특별조치의 시행기준 등

### 1. 시행기준

-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하되,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8.14. 이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2006.8.1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 2.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 기준

-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금품수수행위시점 판단기준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등 뇌물을 공여한 시점

### 3. 부실시공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 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부실벌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부실시공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부실시공행위에 의하여 시설물 손괴, 상해, 사망 등의 부실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사고를 이유로 처분한 경우는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이 원인행위 시점이 됨
  -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는 점검·적발일을 원인행위 시점으로 간주함
  - 따라서 부실벌점의 경우 부과일이 아닌 점검일을 기준으로 부실행위시점을 판단함

## IV.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 1. 개요

-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입찰자격을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하는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

### 2. 해당 행정처분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 하도급 벌점
- 부실벌점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조치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3.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 · 영업정지 등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06.8.15. 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이하 같음)
-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경고처분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의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06.8.15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경고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하도급벌점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근거하여 2006.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2006.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하도급 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 · 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실벌점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6.8.15. 부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 · 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2005.8.15. 이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

실벌점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시정명령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6.8.15.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 2006.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06.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과징금 · 과태료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금 · 과태료중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징금 ·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부실시공,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과징금 · 과태료는 부과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해제하지 않음
-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 · 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기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2006.8.14. 이전에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 결론적으로 2006.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 · 부당한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되,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에 의한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4.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06. 8. 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06.8.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06.8.25. 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V.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2006. 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 2. 결과통보·보고 등

-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06.10.31. 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팀장)에게 통보
-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



### 술을 끊으면 줄어든 뇌가 회복된다?

미국 의학협회AMA 회장인 힐J. Edward Hill박사는 자주 폭음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인다. 알코올에 많이 절여 있는 사람일수록 두뇌 크기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알코올중독자들이다. 특히 젊어서 한 폭음은 더욱 위험하다. 힐 박사는 MRI로 14~21세 사이 청소년들의 두뇌를 촬영해봤다. 그랬더니 폭음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두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청소년들의 두뇌보다 평균 10%나 작았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더 작았다. 놀라운 것은 어른들의 경우 줄어든 두뇌는 금주하면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UCSD의 브라운Sandra Brown박사가 폭음 청소년들의 두뇌를 촬영해 분석해본 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 폭음하는 청소년들은 비록 3주 동안 완전히 금주를 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기억력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태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 두뇌가 알코올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폭음을 피해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 □ 현행법상 건설업체 처벌 현황

구분	관련법령	제재기관	제재내용	효과	비고
입찰담합	형법(137조, 공무집행방해)	형사법원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95조, 98조)	형사법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독점규제법(19조)	공정위	과징금(부당한공동행위)	매출액의 10/100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76조)	당해발주처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 이하	공공공사 참여 불가	전 발주처
	PQ심사	전 발주처	신인도감점(-2점)	공공공사 참여 곤란	1년간
뇌물공여	형법(133조, 뇌물공여죄)	형사법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83조, 95조의 2)	등록관청 형사법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하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 민간공사 참여 불가	양벌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76조)	당해발주처	입찰참가자격제한(2년 이하)	공공공사 참여 불가	전 발주처
	PQ심사	전 발주처	신인도감점(-2점)	공공공사 참여곤란	1년간
부실시공	건설기술관리법	등록관청 또는 인허가관청	업무정지(1년내) 부실별점(3점 미만) 부실별점(3점미만)	- -	개인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83조, 93~96조)	등록관청 형사법원	등록말소, 영업정지(1년미만)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공공+관급 공사 참여 불가	양벌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	당해 발주처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 이하)	공공공사 참여 불가	
	PQ심사	전 발주처	신인도 감점(-2점)	공공공사 참여 곤란	1년간